

1. 개정이유

리베이트 위반행위에 대한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인증평가 세부기준과 인증 최저점수를 명시하여 객관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인증 실패 기업에 대해서 미인증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기준 변경

-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인증심사 또는 인증연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일을 처분일자로 보는 규정 삭제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결 또는 판결일 이후 1년 이내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인증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심사기준을 별표로 공개

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최저 점수를 명시

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실패 기업에 대해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

마.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체계·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시행규칙 제3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으로,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가”를 “제약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로, “검토하여 신청기업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을 “검토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제약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제12조 및 이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제4조의 제목 “(인증기준 부합 정도 평가)”를 “(인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기업의 평가를”을 “제3조에 따른 인증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결과”를 “심의 결과 및 제3조에 따른 인증요건 검토 결과”로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신청기업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심의한다.

제5조의 제목 “(인증 기준)”을 “(인증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를 “영 제1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이 아닐”을 “미만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행령 제12조”를 “영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 시행”을 “법 제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 11호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나.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해당 신청기업의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

2.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

⑤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심판의 기각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기각판결이 있을 경우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인증 연장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 중 “제4조의 평가결과”를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 상 별표에 따른 배점의 합계가 65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중 “2015년 1월1일”을 “2026년 1월1일”로, “매2년”을 “매 2년”으로, “증의”를 “등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구 분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합계
투입 자원 우수성 (30)	연구개발 투자	①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6	20
		② 전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4	
		③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실적	10	
	연구인력	① 연구인력 조직 및 구성의 우수성	5	5
	연구·생산시설	① 연구·생산시설(장비)의 투자 및 구축	5	5
연구 개발 활동 혁신성 (30)	연구개발 전략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5	10
		②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5	
	제휴·협력 활동	①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 제휴·협력 활동 및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8	8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	① 단계별 임상시험 건 수	5	12
		② 연구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혁신성	7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25)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① 보유 기술 및 특허 전략의 우수성	3	8
		② 의약품 및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	5	
	의약품 해외진출	① 의약품 수출 규모	5	12
		② 해외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7	
	혁신 의약품 국내보급	① 혁신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의 우수성	5	5
사회적 기여 책임 (15)	사회적 책임	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10	10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② ESG 경영, 경영 윤리성·투명성 확보 노력	5	5
합계			100	

2.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구 분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합계
투입 자원 우수성 (33)	연구개발 투자	①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6	20
		② 전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4	
		③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실적	10	
	연구인력	① 연구인력 조직 및 구성의 우수성	5	5
	연구·생산시설	① 연구·생산시설(장비)의 보유	8	8
연구 개발 활동 혁신성 (32)	연구개발 전략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5	10
		②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5	
	제휴·협력 활동	① 해외자본 유치, 공동연구, 연구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12	12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	① 단계별 임상시험 건 수	5	10
		② 연구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혁신성	5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20)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① 기술 및 특허의 우수성	2	5
		② 의약품 및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	3	
	의약품 해외진출	① 의약품 수출 규모	5	10
		② 해외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5	
	혁신 의약품 국내보급	① 혁신의약품 개발·보급 성과의 우수성	5	5
사회적 기여 책임 (15)	사회적 책임	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10	10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② ESG 경영, 경영 윤리성·투명성 확보 노력	5	5
합계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임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3조(인증요건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업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신설>

<신설>

제4조(인증기준 부합 정도 평가)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인증 심사) -----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제
약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 검토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

-----.

1.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제약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제1
2조 및 이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
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
는지 여부

제4조(인증심사위원회) ① -----
----- 제3조에 따른 인
증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영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인증 기준) 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2호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정지·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 횟

-----.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신청기업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심의한다.

③ -----
----- 심의 결과 및 제3조에 따른 인증요건 검토 결과
-----.

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영 제12조 제6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를 통산하여 2회 이상 행정 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약사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 각 위반 행위를 통틀어 이하에서 “위반행위”라 한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로 간주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

3. (생략)

②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등 시행령 제12조의 인증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나.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

2. -----

----- 미만일 ---

3.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12조-----

----- 법 제9조제1항

항제2호,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청기업이 2010년 11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받은 행정처분과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다만, 2010년 11월 28일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위반행위는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만 제외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모두 제외하며,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본다.

④ (생략)

<신설>

제2호, -----

-----.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해당 신청기업의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
2.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제6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

<신 설>

<신 설>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심판의 기각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기각판결이 있을 경우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인증 연장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① -----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상 별표에 따른 배점의 합계가 65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기업에게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2
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통보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2026년 1월1일----- 매 2
년-----

----- 등의 -
-----.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외국계 제약기업 이외의 제약기업
에 대한 인증의 경우

구분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합계
투자 우수성 (30)	연구개발 투자	①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6	20
		② 전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4	
		③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실적	10	
	연구인력	① 연구인력 조직 및 구성의 우수성	5	5
	연구·생산 시설	① 연구·생산시설(장비) 의 투자 및 구축	5	5
연구 개발 활동 혁신성 (30)	연구개발 전략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5	10
		②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5	
	제휴·협력 활동	① 국내외 대학·연구소· 기업과 제휴·협력 활동 및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8	8
	비임상·임 상시험 후 보물질 개발	① 단계별 임상시험 건 수	5	12
		② 연구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혁신성	7	
기술 경쟁 성과 우수성 (25)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① 보유 기술 및 특허 전략의 우수성	3	8
		② 의약품 및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	5	
	의약품 해외진출	① 의약품 수출 규모	5	12
		② 해외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7	
	혁신 의 약품 국내보급	① 혁신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의 우수성	5	5
사회 적 기여 책임 (15)	사회적 책임	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10	10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② ESG 경영, 경영 윤리성·투명성 확보 노력	5	5
합계			100	

2. 외국계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의 경우

구분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합계
투입 자원 우수성 (33)	연구개발 투자	①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6	20
		② 전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4	
		③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실적	10	
	연구인력	① 연구인력 조직 및 구성의 우수성	5	5
	연구·생산 시설	① 연구·생산시설(장비) 의 보유	8	8
연구 개발 활동 혁신성 (32)	연구개발 전략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5	10
		②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5	
	제휴·협력 활동	① 해외자본 유치, 공동연구, 연구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12	12
	비임상·임 상시험 보물길 발	① 단계별 임상시험 건 수	5	10
		② 연구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혁신성	5	
기술 경제 성과 우수성 (20)	의약품 특 허 기술이전 성과	① 기술 및 특허의 우수성	2	5
		② 의약품 및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	3	
	의약품 해외진출	① 의약품 수출 규모	5	10
		② 해외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5	
	혁신 의약 품 국내보급	① 혁신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의 우수성	5	5
사회 적 기여 책임 (15)	사회적 책임	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10	10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② ESG 경영, 경영 윤리성·투명성 확보 노력	5	5
합계			100	